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90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우재준 · 박정하 · 임이자
서천호 · 김승수 · 권영진
인요한 · 서범수 · 이인선
배현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장기적 노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최근 한 반도체 기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단기간·급성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성 재해임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 ----- ----- ----- -----. ----- -----.
1. 업무상 사고 가. ~ 마. (생 략) <u><신 설></u>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u> <u>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u> <u>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u> <u>사고</u>
<u>바.</u> (생 략)	<u>사.</u> (현행 바목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